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7. 22 선고 2021나27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7. 22 선고 2021나270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0가합5157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송재

변론종결 2022. 7. 1.

판결선고 2022. 7. 22.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0가합51573 판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A에 대하여 확장하고 피고 B에 대하여 감축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와 C(D생) 사이에 2018. 7. 25.경 체결된 6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95,001,6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는 원고에게 295,001,6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과 위 C 사이에 2019. 4. 10.경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4,583,46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4,583,4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A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한편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피고 A에 대하여 확장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4)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6. 8. 기준 C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319,585,0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2행 ~ 제4쪽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3)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하여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등으로 아래 표와 같이 피고 A는 매매대금 합계 851,934,110원의 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을, 피고 B은 매매대금 8,000만 원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취득자	취득일자	취득 목적물	취득가액
피고 A	2018.7.23.	춘천시 M 임야 6,050㎡	55,000,000원
	2018.10.18.	춘천시 N건물 O호	54,011,610원
	2019.1.25.	춘천시 P건물 Q호	350,000,000원
	2019.3.25.	춘천시 N건물 R호	134,722,500원
	2019.4.15.	춘천시 S건물 T	258,200,000원
피고 B	2019.4.10.	강원 인제군 U 대 137㎡	80,000,000원

○ 제4쪽 제5, 6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3, 20, 25, 30호증을 추가함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2행 마지막 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의 증거에 ‘갑 제21, 26호증, 을 제5호증’을 추가함○ 제1심판결문 제5쪽 제7행 마지막 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 A는 위 답변에서 C과 법적 부녀지간인 것 외에 어떠한 친밀한 관계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증여 무렵 C과 피고 A의 구체적인 관계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이 2019. 8.경 C 및 피고 A를 체납처분면탈혐의로 조사한 일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인출 경위, 양도대금 사용처 추적조사, 양도대금 은닉에 피고 A가 가담하였는지 등의 포괄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C의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1행 ~ 제16행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그 다음에 아래 3)항을 추가함

2) C이 2018. 6. 27. 이 사건 부동산을 J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2018. 7. 12.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그 수령한 달의 말일인 2018. 7. 31.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며 C이 2018. 9. 11. 춘천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319,585,07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500만 원(피고 A 1,000만 원, 피고 B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1, 3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가 2020. 1. 31. 납부한 1,000만 원은 C의 내국세 4,863,680원 및 농특세

5,136,320원에, 피고 B이 2020. 3. 11.과 3. 18.에 납부한 1,500만 원은 C의 내국세에 각

충당되었고, 이러한 충당을 반영한 잔여 조세채권이 2022. 6. 8. 현재 위 319,585,07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변제금을 추가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나. 사해행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사해의사

C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거나 이를 심화시킴으로써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들은 C이 세무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그 납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들면서 자신들의 선의를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익자인 피고들이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들과 C의 관계, 피고 A가 C으로부터 받은 수표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는 이례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도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원고 등 C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인 319,585,0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가 현금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고들 사이의 증여금액 비율로 안분한 한도 내에서 원고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가 증여받은 6억 원 중 295,001,603원[= 319,585,070원 × 12/13(= 6억 원/6억 5,000만 원)], 피고 B가 증여받은 5,000만 원 중 24,583,467원[= 319,585,070원 × 1/13(= 6억 원 / 6억 5,000만 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취소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관하여 부과된 증여세 중 위와 같이 취소되는 부분을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위와 같이 취소되는 부분의 증여세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해행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다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A에 대하여 확장하고 피고 C에 대하여 감축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견종철, 판사 이은상, 판사 김시원 해외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